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418호)	안호영	2024. 12. 12.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568호)	조지연	2024. 12. 17.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17.)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 9. 19.)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각 부처에서 수집 생산하는 감시·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는 감시·예측 정보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실정이므로, 법정 지원대상 계획이나 대책에 활용된 실적과 활용할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 및 활용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나.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정보 및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야별, 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국민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분석하여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활용의 촉진 및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이 지원 대상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①·② (생 략) <u>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 활용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3조(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에 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 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 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 리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른 기 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와 조사·연구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 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u> <u>④ 기상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 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정보 및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야 별, 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 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 황지도(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u>
<u><신 설></u>	

	<u>알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국민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신 설></u>	<u>⑥ 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분석하여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 활용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활용의 촉진 및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① 기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① --

	<u>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u>
--	---------------------------